

대구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323419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대구지방법원 2022. 7. 7 선고 2021나323419 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9. 29 선고 2019가단10950 판결

전 문

원고, 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성구

피고, 피항소인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 O(개명 전 :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문수중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종우

변론종결 2022. 5. 19.

판결선고 2022. 7. 7.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 9. 29. 선고 2019가단1095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피고 B과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5,187,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 O은 원고에게, 제1심판결 별지 목록 제3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가.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8. 10. 15. 접수 제165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나.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등기계 2018. 12. 7. 접수 제2010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고, 3. 피고 O은 원고에게 6,31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1. 피고 B과 D 사이에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8. 10. 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25,187,217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2. 피고 O은 원고에게 16,055,57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12, 13행의 “망 E의 사망 전부터 망 E을 모시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거주해 왔고”를 “망 E과 제일 가까운 곳에서 거주해 왔고”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호, 판사 이경한, 판사 박소영